

윤석열 ·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16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이성윤 · 김용만 · 전현희
전용기 · 이용우 · 김현정
김준혁 · 윤종균 · 이상식
안태준 · 염태영 · 이재강
정준호 · 장경태 · 서미화
박선원 · 김상욱 · 이정현
이연희 · 정을호 · 이재관
김병주 · 김남희 · 김승원
김 현 의원(25인)

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음. 그러나 3년도 못 채운 1,060일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등이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

김건희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수수 등의 의혹은 물론,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 명품백 등 금품 수수 등 술한

범죄혐의가 쏠리는 당사자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방패삼아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없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누려 왔음. 또한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선거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킴. 아울러 지난 2023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불법적 구명 로비 정황 등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음.

무엇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킨 주범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함으로써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고, 이는 윤석열 파면의 핵심 사유이자 파면 후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으로서 재판 받아 마땅한 이유로 작용함.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임기 전부터 재임 기간 내내, 그리고 임기 끝까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있었음.

한편 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들이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범죄의혹들을 삼분하여 수사 및 기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이어받은 사법부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판진행으로 내란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하며 불신

과 우려를 자초하는 형편임.

이에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둬으로써, 윤석열·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권력형 비리’ 범죄를 뿌리뽑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화답하는 동시에 반헌법적 국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및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 및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함(안 제2조).

다. 대상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

(안 제3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담당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

의 녹음·녹화·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

판부에서 심리하고, 항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2

조부터 제14조까지).

아. 대상사건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상고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6조).

자. 전담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법무부, 법원, 대한

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차.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

작감경을 적용받지 않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

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됨(안 제23조 및 제24조).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권력형 비리와 내란·외환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영장전담법원과 제1심 전담재판부 및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제3조(다른 법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4조(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

· 수색 · 검증 ·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5조(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 · 수색 · 검증 ·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3명을 제17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6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제1심 소송을 담당할 3개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이 경우 각 전담재판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사건 담당 전담재판부
2.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사건 담당 전담재판부
3.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사건 담당 전담재판부

②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전담재판부의 재판장 및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7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7조(재판관할)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제1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8조(재판의 이관)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제1심 소송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은 제7조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관이 된 경우 전담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를 간

이하에 할 수 있다.

제9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참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전담재판부는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 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해당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재판기간)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항소심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고등법원에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3개의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둔다. 이 경우 각 항소심 전담재판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사건 담당 전담재판부
2.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사건 담당 전담재판부
3.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사건 담당 전담재판부

② 각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항소심 전담재판부의 재판장 및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 17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3조(재판관할 및 재판의 이관)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전담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항소심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재판은 제1항에 따른 항소심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관이 된 경우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판기간)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항소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9조 및 제10조는 항소심 전담재판부에 준용한다.

제16조(전담재판부의 상고심)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판결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상고심 판결의 선고는 상고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하

여야 한다.

③ 제9조 및 제10조는 상고심에 준용한다.

제17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①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법무부가 추천한 1명

2.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4명

3.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판부별로 3명씩 지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영장전담법관 3명

2. 제6조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3개의 제1심 전담재판부 판사 9명

3. 제12조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3개의 항소심 전담재판부 판사 9명

⑥ 영장전담법관 후보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⑦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영장전담법관 3명과 3개의 전담재판부 및 3개의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추천위원회가 지정한 각 재판부별로 3명씩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판사회의) ①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4명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후보자의 추천 등)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17조제5항 각호에 따른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추천된 사람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제17조제5항 각호에 따른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23조(사면 및 감형의 제한)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법」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면·감형·복권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4조(정상참작감경의 배제)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제23조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를 이 법 시행 전에 전담재판부가 아닌 법원 또는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 그 6개월의 재판기간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을 송부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주 이내에,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2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우선효력)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